

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공고

안성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성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: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(교원위원은 교원)

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등록기간: 2021년 3월 8일 ~ 3월 11일까지 【근무시간 내】

다. 등록장소: 안성중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행정실 비치 양식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: 학부모위원 2021년 3월 18일, 교원위원 2021년 3월 17일

나. 선거장소: 중학교 음악실

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: 학부모위원 4명, 교원위원 2명

라. 선거방법: 직접투표,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

*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및 우편투표는 투표 전날(근무시간 내)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

마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1년 3월 15일 ~ 3월 17일(행정실)

2021년 3월 8일

안성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